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5. 25 선고 2019가단128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윤상홍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라영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복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6. 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78,015,893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13,002,648원, 피고 C, 피고 D은 각 32,506,6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E과 피고들 및 소외 F 사이의 2018. 12. 5.자1)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118,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19,666,666원, 피고 C은 49,166,666원, 피고 D은 49,1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E 사이의 금전거래

1) E은 원고 및 원고의 소개로 G, H, I(이하 G, H, I를 통칭하여 ‘G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왔는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월 10% 상당)을 하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약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2) E은 그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9. 4. 29. 원고에게, “E은 ”J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법적지분 1/4을 매매든 상속이든 처분이 이행되었을 시 원고에게 채무된 금액(2억 원) 못 갚을시 1/4의 법적지분을 전부 양도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원고와 E은 위 약정서를 공증하였다).

3)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2억 원 및 원고가 E의 부탁을 받고 대신 송금하여 준 돈 합계 175만 원(2019. 4. 22. 100만 원, 2019. 5. 8. 7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단13264호2)) 위 법원은 2021. 4. 14. “E이 그간의 채무(G 등의 거래 포함)를 정산하여 채무액을 2억 원으로 확정된 다음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와 E 및 G 등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정한 월 이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것으로 무효이며, G 등이 E에게 대여한 돈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G 등이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E에게 대여한 돈 및 E이 원고에게 변제한 돈(G 등이 E에게 대여한 돈 및 E이 G 등에게 변제한 돈 제외)을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변제충당하여 “E은 원고에게, 59,066,873원 및 그 중 58,405,670원에 대하여 202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1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사건 제1심’이라고 한다).

4)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E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항소심에서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제2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021. 11. 24. 원고와 E 사이에 “E이 원고에게 118,000,000원을 2021. 12. 24.까지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관련사건 항소심’이라고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처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소외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2018. 12. 5. 사망하여, 그 배우자 피고 B(3/11지분), 자녀인 피고 C, 피고 D, 소외 F, E(각 2/11지분)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9. 6. 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동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부동산의 지번이 “L”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J”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 후 피고들은 2019. 6. 7.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M에게 9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6. 25.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4,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 9, 10, 11,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E은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118,0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인 2/11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118,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2) 한편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그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각 E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피고 B는 19,666,666원을 피고 C, D은 각 49,1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 1) 원고의 E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 2)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E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 3) E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4)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여 그 기여도가 50%정도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만이 실제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22 지분을 상속받았을 뿐이다.
- 5) 한편, 피고 D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층 임차인 N, O에게 2019. 5. 30. 합계 20,964,570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였고, 그 외에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노래연습장 임차인에 대하여 1천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후 상속등기를 위하여 취득세 17,992,880원을 납부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은 피고 B의 기여분을 50%로 협의하였고, 이에 실제 이 사건 부동산 중 E이 상속받은 2/22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9,185,686원[(920,000,000원 - 20,964,570원 - 10,000,000원 - 17,992,880원) x 2/2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는데, 피고 B가 E에게 2018. 3. 19. 3천만 원, 2018. 3. 30. 7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9. 6. 3. 피고 C이 E의 소외 P에 대한 채무 9,3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22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설령 이 사건 상속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채권액수는 망인이 사망한 2018. 12. 5.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계산하면 원금 27,296,162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가액배상금액, 채무자인 E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망인이 사망한 2018. 12. 5.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속분할협이가 실제로 2019. 6. 3.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2019. 6. 3.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나.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1) 대여금 채권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에게 2018. 8. 20. 1,485만 원, 2018. 10. 4. 1천만 원, 2018. 10. 31. 950만 원, 2018. 12. 5. 1,800만 원, 2019. 1. 9. 1천만 원, 2019. 1. 16. 1,450만 원, 2019. 1. 28. 1,550만 원, 2019. 1. 31. 400만 원, 2019. 2. 7. 900만 원, 2019. 2. 20. 485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3), E이 별지 표 기재 각 변제일에 각 변제액란 기재 돈을 변제한 사실4) 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에서 법정변제충당을 하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인 2019. 6. 3.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은 원금 60,329,632원 및 이자 1,028,570원(= 60,329,632원 x 24% x 26/366, 원미만버림, 이하 같다)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구상금 채권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의 부탁을 받고 E이 지급할 돈 175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E은 원고에게 위 1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G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고, 이를 토대로 원고와 E 사이에서 채권액을 118,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채권액 역시 11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에는 G 등이 E에 대한 채권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액수 역시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2억 원이나 그 후 조정된 118,000,000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E에 대한 위 1)항 및 2)항 기재 각 채권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E의 무자력

1) 갑 제7호증의 5, 13, 17, 19, 20, 21, 22, 23, 24, 26,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E의 적극재산은 가액 814,249,000원 상당의 “경주시 Q 대

449.9㎡ 및 그 지상 R동 및 S동”과 가액 167,272,727원(= 920,000,000원 x 2/11)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으로 합계 981,521,727원에 불과하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T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320,000,000원, U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3억 원(위 U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이루어진 직후 E 소유의 위 Q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9. 6.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들은, 위 U의 채권은 원금이 160,000,000원이고 E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변제한 돈 및 선이자로 공제된 돈을 고려하면 잔여금은 16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V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천만 원, W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천만 원, X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 20,330,495원(피고들은 위 채무는 승용차 할부채무인데 승용차를 회수당하여 실제 잔존채무는 위 20,330,495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Y에 대한 채무 73,000,000원, Z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250,000,000원(피고들은 Z에 대한 실제 채무액은 위 2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채무 5,546,450원, 경주세무서에 대한 채무 174,670원(근로소득세), 경주시에 대한 지방세 17,570원 합계 1,029,069,185원으로, E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E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음에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E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더구나 E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하기 직전인 2019.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처분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으면서도 2019. 6. 3.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E은 실질적으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성립의 요건과 효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한 것은 2018. 12. 5.인 반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이루어진 것은 상속포기가 가능한 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6. 3.임은 역수상 명백하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 역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의하여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민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피고 B의 기여도가 50%이고, 피고 B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이전에 E에게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C이 E을 대신하여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하면서 E의 P에 대한 채무 9,3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B가 망의 배우자로서 오랜 시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의 기여도가 50%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이전에 E에게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 C이 E의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결국 E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6. 3. 체결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2/11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고, 원고 역시 가액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그 금액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상속분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4) 먼저 원고의 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이후 2019. 8. 16. 588만 원, 2021. 2. 5. 2,000만 원을 각 추가로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원고의 채권액을 계산하면 78,015,893원[= 원고의 대여금 채권액 76,194,935원{= 원금 58,405,670원 + 2021. 2. 5.까지의 기발생 이자 661,203원 + 원금에 대한 2021. 2.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4. 27.까지 446일간 이자 17,128,062원(= 58,405,670원 x 24% x 446/365)} +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 1,820,958원{= 원금 1,750,000원 + 원금에 대한 2020. 7. 6.부터 2022. 4. 27.까지 296일간 이자 70,958원(= 1,750,000원 x 5% x 296/365)}]이 된다.

5) 다음으로 피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상속분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직후인 2019. 6. 7. 이 사건 부동산을 92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역시 9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B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상속분 $10/330 [= (1/3 - 3/11) \div 2]$ 의 가액은 27,878,787원(= 920,000,000원 x 10/330)이고, 피고 C, 피고 D이 각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상속분 $25/330 [= (1/3 - 2/11) \div 2]$ 의 가액은 69,696,969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등록세 17,991,77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임차인 N, O에 대한 임차보증금 20,964,570원을 반환하였으며, 2층 노래연습장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를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임차보증금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고, 그 밖에 사해행위 내지 사해행위 이후 이루어진 수익자의 후속 처분행위에 드는 비용 내지 세금 등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등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닌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취득등록세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 78,015,893원의 범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금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3,002,648원(= 78,015,893 x 10/60), 피고 C, 피고 D은 각 32,506,622원(= 78,015,893 x 25/60)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별지

1) 원고는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이 '2018. 1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사해행위 일자를 2018.12. 5.로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은 등기부의 기재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 일자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기재한다는 등기에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E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2019. 6.3.경 이루어졌으므로, 주문에서는 “2019. 6. 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로 기재하였다.

2) 175만 원 청구 부분은 소제기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추가된 청구이다.

3) 송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관련 사건에서 2018. 8. 20., 2018. 12. 5., 2019. 2. 7. 각 송금한 돈은 10%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송금한 것으로 사실인정되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산의 편의상송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관련사건에서도 원고가 스스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실제 E에게 지급한 돈을 대여금 원금으로 산정하여 주장하였고, 이에 실제 송금한 금액을 대여금 원금으로 하여 변제충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갑 제11호증에서 확인되는 E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 중 관련사건 제1심에서 변제금으로 사실인정한 금액이다[관련사건 제1심판결문 제12쪽에 “피고(E을 의미한다)가 송금한 돈 중 피고(E을 의미한다)가 변제주장을 하지 않은 돈은 제외하고,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돈을 포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관련사건 제1심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